

2014. 3. 25(수) 11:00
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

| 의안 번호 | 안 건 명 | 제 안 자 (제안설명) |
|----------|---|-----------------|
| 1629 |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주시장 (경제과장) |
| 1630 | 충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충주시장 (도로과장) |
| 1631 |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충주시장 (농정과장) |
| 1614 |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충주시장 (상수도과장) |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안 건 명 | 제 안 자 | 회 부 자 | 상 정 자 | 의 결 자 | 제안설명 |
|--------------------------------------|-------|-------|-------|-------|-------|
|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2 | 3.13 | 3.19 | 3.19 | 경제과장 |
| 충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12 | 3.13 | 3.19 | 3.19 | 도로과장 |
|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3.12 | 3.13 | 3.19 | 3.19 | 농정과장 |
|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3 | 1.13 | 1.20 | 3.19 | 상수도과장 |

2. 제안 설명 요지 및 주요내용

㉠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 설명 요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한 지원(납부) 범위와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시민에게 편의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급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2조)

- 단독주택 →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나. 보조금 지원 한도 규정 삭제(안 제6조)

- 일 반 : 시설분담금의 50% / 세대당 최고 150만원까지
- 수급자 : 시설분담금 전액 / 세대당 최고 200만원까지

다. 시설분담금 전액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6조의 단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로서 해당 주택의 소유자일 때

라. 지원대상 선정 기간 명시 규정 삭제(안 제8조)

- 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삭제

마. 보조금 지급 방법 변경(안 제9조)

- 변경 전 : 시장 → 보조사업자
- 변경 후 : 시장 → 보조사업자의 위임을 받은 도시가스사업자

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변경(안 제12조)

- 담당업무 국장 ⇒ 담당업무 과장

사. 위원회의 서기 규정 삭제(안 제14조)

- 간사와 서기 ⇒ 간사만

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② 충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 설명 요지

점용료 산전기준 및 조정산식, 감면항목 신설, 점용료 분납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규정에 적합하게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산정기준 항목 일부 수정(안 제3조)

- 점용료산정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부분과 닿아있는 토지 (도로부지제외)로 개정
-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표시면적 표시부분 가장 큰 1개의 면적기준으로 산정

나. 소액부징수 예외 조항 추가(안 제5조)

- 공익사업기관 감면(50%)전 점용료가 5천원 이상의 경우 부과

다. 감면 규정 신설(안 제6조)

- 주상복합건축물의 진출입로 주택면적비율 면제
- 소상공인 영업소의 진출입로 10% 감면

라. 분할납부 가능 항목 신설(안 제8조)

- 연간점용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 분할 부과가능

마. 대리(위임)자 고지 납부 규정 신설(안 제9조)

- 건물소유자 2인 이상의 경우 관리인 또는 위임한 대리자에게 고지가능

바. 점용료 산정 기준표 수정 별표1

- 주유소 주차장 등 진출입로 점용료를 토지가격에 25%에서 2%로 20%인하
-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공사장 진출입로 등 산정기준 추가

사. 점용료 조정산식 수정 별표2

- 조정산식(산출점용료 증가율에 따른 조정)단순화

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③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제안 설명 요지

농업인 등의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의 도매시장가격과 최저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나. 기금 존속기한 신설 : 2023년 12월 31(안 제3조제4항)

다. 새로운 용어 추가(안 제2조)

- 최저가격, 도매시장 가격, 생산비, 계통출하, 차액

라. 가격안정 차액 지원 대상 농림축산물과 범위 규정(안 제9조)

- 사과 : 20,000m²까지

- 고추, 복숭아 : 10,000m²까지

- 밤 : 50,000m²까지

- 한우 : 연간 출하 두수 30두까지

마.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차액 지원 대상 농가 규정(안 제10조)

- 사과, 고추, 복숭아 : 1,000m² 이상 재배

- 밤 : 30,000m² 이상 재배

- 협동조합을 통하여 한우 5두 이상을 계통 출하

④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 설명 요지

불합리한 수도요금 부과 규정을 개선하여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펼쳐 나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에 따라 급수를 중지하였을 때에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개전신청 시 개전수수료만
부과하도록 함.(안 제28조 제4항)
- 나. 수도요금 감경 대상을 수도법에 따라 확대 정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안 제40조 제1항 제4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개정안은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도시가스(LNG) 공급 사업의 확대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첫째 안 제2조에 공급대상 건축물을 당초 단독주택에서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수요가 세대수 증대를 통한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둘째 안 제6조의 보조금 지원 규모에 있어 일반세대의 경우 최대 150만원, 수급자의 경우 200만원까지 지원하던 시설분담금의 세대당 한도 금액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전액지원 대상으로는 수급자 소유의 주택에 도시가스를 설치할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여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였음.

셋째 안 제9조에는 보조사업자의 위임을 받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안 제14조에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② 충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조례의 불부합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여 도로 점용료 징수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 사료됨.

③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본 조례 개정안은 「농업발전기금 조례」를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금융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 사업뿐 아니라 농림축산물 가격안정지원금으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불안요인을 최소화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양질의 농림축산물 생산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다만, 지원대상 농림축산물 품목과 지원대상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 대상품목 | 최소 재배면적 | 최대 지원면적 | 비고 |
|------|--------------|----------|----|
| 사과 | 1,000㎡ | 20,000㎡ | |
| 고추 | 1,000㎡ | 10,000㎡ | |
| 복숭아 | 1,000㎡ | 10,000㎡ | |
| 밤 | 30,000㎡ | 50,000㎡ | |
| 한우 | 년 5두 이상 계통출하 | 년 30두 까지 | |

안 제6조에 농업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충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동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3이상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향후 집행부에서는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는 충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상위 법령에서 정한 민간전문가 구성요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④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개정안은 급수 중지중에도 구경별 기본요금의 부과됨에 따른 민원 불만을 해소하고 급수 중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과 수도요금 감경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확대하여 관련 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첫째 안 제28조 제4항에 급수중지 기간에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급수 재개 시 개전수수료를 받도록 개정하는 것은

급수 중지 기간 중에도 부과되는 기본요금의 일괄 부과에 따른 민원 불만 및 부담을 해소하고 급수정지 신청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장기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누수 및 도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사회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1) 급수중지 수용가별 현황 분석

(2013.10. 기준)

| | |
|-----------------|------------|
| 총 급수중지 수용가 | 211전 |
|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수용가 | 40전 (19%) |
|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수용가 | 171전 (81%) |

2) 급수중지 수용가별 부담액 분석

| | |
|-------------|---------------|
| 개정 전 부담액 총액 | 10,202,560 원 |
| 개정 후 부담액 총액 | 3,165,000 원 |
| 개정 전후 차액 | - 7,037,560 원 |

※ 수용가 평균 부담액 33,353원 부담 감소 예상

둘째 안 제40조 제1항 제4호의 요금 감면 대상을

당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에서 수급자로 확대 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 하다 사료 됨.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질의답변 요지

①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질의: 보조금 지원한도를 삭제하면 공사비만 부풀려져 공사업자만 배불릴 소지가 있는데 ?

답변: 분담금은 100M당 세대수를 따져서 산정되기 때문에 크게 부풀어질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임

(2) 질의: 면 지역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답변: 농촌지역의 경우 소형탱크를 보급하는 것으로 추진

(3) 질의: 보조금 지원한도를 최대 300만원으로 하면 어떤지?

답변: 원거리 지역 주민 혜택을 위해 한도를 삭제하는 것임.

② 충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질의: 점용료 산정요율은 완화 되는 것인가?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낮추는 것은 옳지 않다 보는데?

답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한 것임

(2) 질의: 점용료 감면대상 시설 중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사례 및 불법 점용시설이 많은데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음

답변: 파악해 보겠음

③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1) 질의: 사과,고추,복숭아,밤,한우 외의 농작물은 지원이 안 되는지?
답변: 현재는 충주시 대표작물을 규정하였으며 향후 확대 가능함.
- (2) 질의: 지원대상 농가 규모가 대농임, 영세농가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 옳다 보는데?
답변: 최고 한도를 규정해 놓은 것임.

④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질의: 급수중지 후 신규번지 내 신규시설시 시설분담금을 또 받는지?
답변: 신규시설의 경우 부담해야 함.
- (2) 질의: 기본요금 800원 부과되는 건의 사유는? 상수도가 공급 되면 마을 간이수도는 폐쇄해서라도 사용을 독려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답변: 면지역의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3) 질의: 전기의 경우 보육시설도 감면해 주고 있음 수도료도 감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향후 검토해 보겠음.
- (4) 질의: 광역상수도 보급지역은 마을간이급수시설은 폐지를 하는지?
답변: 원칙상으로는 대장상 폐지를 하고 있으며 마을별로 자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5. 심사결과

- ①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의결
- ② 충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③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④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불 입

-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부.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제1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충청북도 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 규정」의 별표 2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세대당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구에는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충청북도 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 규정」의 별표 2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세대당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구에는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규모) ① 보조금사업자에게는 「충청북도 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 규정」----- ----- -----지 원한다. ----- ----- 수급자 소유의 주택 에 설치할 때----- -- 지원한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현행과 같음) |